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21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전진숙 · 이수진 · 최혁진
손 술 · 양부남 · 문금주
이개호 · 안도걸 · 전종덕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조정이 미흡하고,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돌봄정책의 일관된 추진체계와 범정부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을 “아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돌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돌봄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 돌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둔다.

⑤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사무	돌봄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사무	돌봄청장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사무	돌봄청장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사무	돌봄청장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교육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또는 돌봄청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돌봄청
고용노동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돌봄청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또는 돌봄청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별 법률에 따라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돌봄청장의 행위 또는 돌봄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돌봄청, 돌봄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u>영·유아 보 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u>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교육부) ① ----- ----- <u>학교교육</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 ·사회보장· <u>아동(영·유아 보 육은 제외한다)</u> ·노인·장애인 ·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 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다.	제42조(보건복지부) ① ----- ----- ----- <u>아동</u>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돌봄정책의 수립·총괄·조 정, 돌봄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 돌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 속으로 돌봄청을 둔다.</u>
<u><신 설></u>	<u>⑤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u>